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7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이현승 · 구자근 · 박덕흠
김은혜 · 박수민 · 서천호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3.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등 지원
4.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
5.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관리·감독 지원
6.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구조·보호 지원

7.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8.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9. 동물보호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지원

10.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발생 예방 및 단속 지원

12.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2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2조의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97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92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2조의3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제3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원장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진흥원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이 성립할 때까지 그 설립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은 설립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위원회 명의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

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2조의2(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u> <u>2.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u> <u>3.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등 지원</u> <u>4.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u>

5.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
업의 관리·감독 지원
 6.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구조·보호 지원
 7.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8.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9. 동물보호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지원
 10.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지
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유통·판매 행위 발생
예방 및 단속 지원
 12.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

	<u>홍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u>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92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u> <u>진흥원이 아닌 자는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92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신 설></u>	<u>제92조의5(비밀누설 등의 금지)</u> <u>진흥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7조(벌칙) ① (생 략)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14.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제92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92조의3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	--